교육부		보도자료		
보도일시	2017. 12. 6.(수) 석간	담당부서	학생건강정책과	
배포일시	2017. 12. 5.(화)	담당과장	조명연(044-203-6877)	
대변인실	044-203-6588	담당자	사무관 김태환(044-203-6541)	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제1차 『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(18~22)』 발표

-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확대 : 고속도로 및 철도 등 대형공사
- 교육환경보호 지수제도(신호등) 도입
- □ 교육부(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)는 학생이 건강하고,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하여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'교육환경법')에 따라 수립된 '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'(18~'22)'(이하 '기본계획')을 발표하였다.
- □ 「교육환경법^{*}」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,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^{**},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등의 내용을 규정하면서,
 - * 구「학교보건법」에서 규정하던 교육환경평가,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, 「교육환경법」에 반영되어 '17.2.4. 시행('16.2.3. 제정)
 - ** 학교 주변 정비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, 그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(교육감은 이행여부 확인) ** 연도별 교육환경평가 건수: ('08) 60건—('10) 282건—('12) 593건—('14) 303건—('16) 296건
 -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'기본계획'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.

□ 이번 '기본계획'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, 정책연구,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.

<교육환경평가제도 내실화>

 학교 주변 고속도로 및 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교육환경 평가대상 사업으로 추가('19.)하여,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교육 환경 피해 정도의 예측 및 보호 대책 마련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.

※ '15년 서울 중랑구 소재 OO초 인근 고속도로 설치 공사에 따른 교육환경 피해 사례 등 <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대상 확대안>

현행

- ·학교를 설립하려는 자
- ·학교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건축물 (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)을 건축 하려는 자

<추가>

확대

- ·학교를 설립하려는 자
- ·학교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건축물 (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)을 건축 하려는 자
- ·고속도로 및 철도 등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

 현재는 누구든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, 교육환경평가 대행기관 등록요건을 마련('20.~)하고, '(가칭)교육환경평가사' 민간자격을 도입('21.~)할 예정이다.

<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강화>

-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**관련 전문기관을** 지정하여 운영(한국교육개발원)중에 있으나, 교육환경 보호 업무의 증가에 따른 지원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 기관 설립을 추진('18.)한다.
-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 체결, 공동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환경 피해 유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및 유해시설의 신속한 조치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.('18.)

<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활성화>

-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교 주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모두 공개('18.~')하여,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,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이 승인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한다.
- 또한, 학교 또는 지역단위 교육환경 피해 우려상황을 진단하고, 우려되는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조치 우선순위를 마련하게 하도록 하는 '교육환경보호 지수제도(신호등)'을 도입('21.)하고, 관련 현황은 '교육환경정보시스템'에 공개한다.

<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리강화 및 관계자 인식제고 >

-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의 설치 예방 및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**불법 운영시설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**하고,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시설에 대한 **자진 이전·폐쇄 유도** 및 대집행을 적극('22년까지 모든 불법시설 이전·폐쇄 완료) 추진한다.
- 또한,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전반에 대해 교육청, 학교관계자 및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매 3년 마다 정례적인 인식도조사를 실시하고, 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 시 반영하여 현장 착근성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.

<교육환경보호제도 인지도 변화 추이 및 목표> (단위: %)

구 분	2007년	2010년	2013년	2016년	2022년(목표)
<u></u> 학 생	1.9	8.4	21.4	30.5	80.0
교직원·학부모	8.2	29.6	51.0	65.1	95.0

□ '기본계획'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,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연차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(이하 '시행계획')을 수립하게 되는데, 2018년 시행계획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수립할 예정이다.

- □ 교육부 정종철 학생복지정책관은 "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으로,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,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데의가 있다"라고 말했다.
 - 또한, "관계부처, 교육청 및 자치단체 모두가 협력하여 동 기본계획의 세부과제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"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『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('18~'22)』 주요내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태환 사무관(☎ 044-203-65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('18~'22) 주요내용

1. 수립배경

- 학교 주변 재개발·재축건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예정에 따라 통학 안전을 비롯한 일조, 소음·진동, 비산먼지 등 교육환경 침해문제 발생 우려
 - ※ '공사트랙 쌩..등굣길 아이들이 위험하다'('17.4.27., 조선일보), '공사장 흙먼지에 운동장 뺏긴 아이들'('17.6.13., SBS) 등
-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, 교육 및 홍보,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제 구축 등 사회적 풍토 조성 및 실행력 확보 필요
 - ※ '교육부장관은 매 5년 마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수립'(교육환경법 제4조)

2. 주요 추진경과

- 교육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('16.5~12월)
 - ※ 국가수준의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실시 (한국교원대학교)
-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(안)에 대한 **시·도교육청 관계자 사전 설명회** 개최(17.9.22)
-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(안)에 대한 **관계부처 및 시·도교육청 의견** 조회(17.10.10~16.)
-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(안)에 대한 부내 관련부서 의견조회('17.10.25~27.)
-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(안)에 대한 관계부처 2차 의견 조회(17.11.16~23.)

3. 주요 추진과제

- (교육환경평가제도 내실화)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
 - 학습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행위 또는 유해시설 중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설을 교육환경평가대상에 추가('19.~)

<교육환경평가대상 확대안>

현행

- ·학교를 설립하려는 자
- ·학교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건축물 (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)을 건축 하려는 자

<추가>

강화

- ·학교를 설립하려는 자
- ·학교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건축물 (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)을 건축 하려는 자
- ·고속도로 및 철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(추가)
- 교육환경평가 **대행기관 등록요건**(인력, 시설 등) 마련 및 교육환경 평가사 민간자격 도입 검토('21~')
- ※ 약 70여개의 기관이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대행(환경영향평가서 대행기관, 건축사무소 등)
- (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강화)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 기능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협력·지원체계 강화
 - 교육환경 보호 업무의 증가에 따른 지원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현행 지정기관의 업무 이관 받아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관 설립 추진('18.)

<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 주요 업무>

- ▶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
- ▶ 교육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
- ▶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·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
- ▶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·보급
- ▶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, 관리, 기술지원 및 평가
- ▶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·교육·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
- ▶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관리
- ▶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
- ※ '17. 11월 현재 공모를 거쳐 '한국교육개발원'을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으로 지정·운영 중('17.3.13~'17.1231.)
-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환경보호 중심 역할 수행 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조례 제정·운영* 등 적극 추진(18.~)
- ※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·점검,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등에 대한 이전·폐쇄(대집행) 등 공동대응

- **(담당인력 전문성 제고)** 교육환경보호 업무의 전문성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 마련('19.~)
 - 교육환경보호 업무의 전문성 및 대외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내 교육환경보호 업무 기능 강화('19.~)
 - □ 교육청 내 교육환경보호 업무 강화를 고려한 전담부서 설치 및 담당 공무원 전문직위 지정·운영 등은 지방교육자치강화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총괄적 검토 예정
 - 교육청 내 심의위원회(시도위원회, 지역위원회) 위원 및 업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^{*}를 위한 **정례 연수과정** 운영('18.~)
 - * 특히,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현장확 인·조사방법 등 실습교육 중점 실시
- (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)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한 제 공정보 내실화 및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
 -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시 **교육환경에**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정량적으로 진단*할 수 있도록 개편('18~'20)
 - *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을 통해 최적의 교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
 - 학교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주변 교육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유도를 위한 교육환경보호 지수제도(신호등) 도입 추진('21.~)
 - ※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연구('19) →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개편('19) → 법령 개정 검토('20) → 제도 도입('21)
- (학교 주변 유해시설 관리강화 및 인식제고)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강화 및 학교 관계자의 교육환경보호제도 인식 제고
 - 인·허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불법시설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 및 불법시설에 대한 신속한 이전·폐쇄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
 - ※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목표 : ('17. 6월) 273개 → ('22년) 0개
 - 교육환경보호구역, 교육환경평가 등 주요 교육환경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향상을 위한 홍보 등 강화('18.~)

<교육환경보호제도 인지도 변화 추이>

(단위:%)>

구 분	2007년	2010년	2013년	2016년
 학 생	1.9	8.4	21.4	30.5
교직원·학부모	8.2	29.6	51.0	65.1

4. 실행체계주요 추진과제

-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(매 5년 주기)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·추진
 -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,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,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-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'시·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
 -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또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(익년도 3.31.까지)

5. 향후 일정(안)

-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시·도교육청 통보('17. 12월 초)
- 시도교육청별 2018년 시행계획 수립('17. 12월 말)

참고 1

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('18~'22) 추진방향

비전

학생이 건강하고, 학부모가 안심할 수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



전략 및 목표

- 법적 · 제도적 기반 조성
- 안정적·전문적 지원체계 구축
- 객관적·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



5대 영역		10개 추진과제			
1	교육환경평가제도 내실화	1-1. 교육환경평가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1-2. 교육환경평가 내실유도 및 체계적 관리			
2	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강화	2-1.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 기늉 강화 2-2.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			
3	교육환경보호 업무 전문성 제고	3-1. 교육청 내 교육환경보호 업무 기능 강화 3-2. 교육환경보호 인력 역량강화			
4	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	4-1.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고도화 4-2.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확대			
5	학교 주변 유해시설 관리강화 및 관계자 안식제고	5-1.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강화 5-2. 교육환경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제고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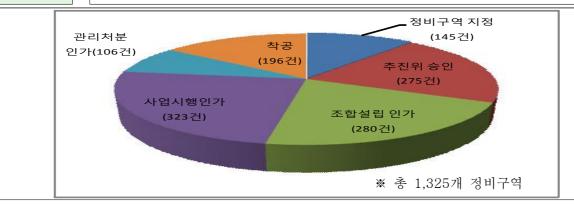
참고 2

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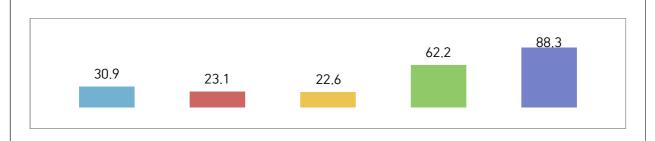
영역	추진과제	주요 성과지표		2018년	2022년
교육환경평가 제도 내실화	교육환경평가 대상	○ 교육환경평가항목 개선		정성	정량
	확대 및 기준 강화	○ 교육환경평가서 작· 가이드라인 마련	-	마련	
	교육환경평가 내실유도	○ 대행기관 등록요건	-	마련	
	및 체계적 관리	○ 교육환경평가사 민	-	도입	
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강화	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 기능 강화	○ 전문기관 기능 확대		학교 외 환경	학교 내 환경 포함
	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	○ 교육환경보호계획 수립 일원화		이원화	일원화
교육환경보호 업무 전문성 강화	교육청 내 교육환경보호 업무기능 강화	○ 전문직위 도입 등 검토		-	도입
	교육환경보호 인력 역량 강화	○ 전문연수과정 운영		미운영	운영
교육환경정보 시스템 운영 활성화	교육환경정보시스템 고도화	○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전면 온라인화		일부	전면실시
	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확대	○ 교육환경보호 지수제도		-	도입
학교 주변 유해 시설 관리강화 및 인식제고	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강화	○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		273개	0개
		○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·고시현황 오류정보 조치		30%	100%
		○ 금지행위 및 시설별 개관적 심의기준안 마련		-	마련
	교육환경보호제도에 대한	교육환경보호구역	학생	30.5%	80 %
	인식제고	인지도	교직원 학부모	65.1%	95 %

참고 3

교육환경보호제도 현황



<'15.12월 기준 200미터 이내 학교가 위치한 정비사업 추진현황>



<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학생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('16년>



<연도별 교육환경평가건수(평가서 접수건수 기준)>



<연도별 교육환경평가건수(학교수 기준)>